#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02

발의연월일: 2024. 8. 16.

발 의 자: 민형배・이재관・박홍근

이정문 • 김원이 • 이기헌

소병훈 · 김현정 · 이수진

김문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결산 심사과정을 예결위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 세부심사, 예결 위 최종 조정 등 3단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재정 총량에 대한 거시 적 통제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실질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 예·결산 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종합심사로 2단계 구조입니다. 이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문에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각 위원회 심사가 개별 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면서 예산 총량의 거시적 심사가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예·결산 심사과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부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조정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부심사 결과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재정 총량에 대한 거시적 통제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실질화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제84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안과 결산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국회예 산정책처 및 정부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 심사지침을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 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 1. 회계연도 총수입, 총지출 및 국가채무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2. 분야별·위원회별 예산안 지출 한도 및 예산안 심사지침(결산의 경우 분야별·위원회별 결산 심사지침을 말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재정심사지침을 보고한 경우 지체 없이 재정심사지침을 본회의에 부의하며, 재정심사지침이 의결된 경우 예산안과 결산에 재정심사지침을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③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 및 결산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재정심사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예산안에 제3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조정을 거친 후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조정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재정심사지침에 어긋나는 범위에 한정하며, 재정심사지침을 준수한 결과를 조정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 를 할 때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 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 ⑥ 정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 ⑦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⑧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산안 또는 결산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하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 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 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 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 설을 듣는다.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 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 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 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 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 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 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및 정부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심사지침을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 1. 회계연도 총수입, 총지출 및

   국가채무 등 국회규칙으로 정

   하는 사항
- 2. 분야별·위원회별 예산안 지출한도 및 예산안 심사지침(결산의 경우 분야별·위원회별 결산 심사지침을 말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결산특별위원회가 재정심사지 침을 보고한 경우 지체 없이 재정심사지침을 본회의에 부의 하며, 재정심사지침이 의결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 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 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할 때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 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과 제2 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 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 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 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 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 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 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 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 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의 심사로 본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경우 예산안과 결산에 재정심 사지침을 첨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 및 결산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재 정심사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예산안에 제3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조정을 거친후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조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재정심사지침에어긋나는 범위에 한정하며, 재정심사지침을 준수한 결과를 조정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투 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 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할 때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⑥ 정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 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원회의 심사로 본다.

①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 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⑧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 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 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